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3월 25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3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4월 3일

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507호, 2014.3.24. 공포, 2014.9.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21호, 2014.9.25.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9조)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1조)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달 된 표준안을 참고로 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내용은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안 제6조)
 -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시장은 매년 1년 단위 성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내용 달성 정도를 평가토록 함.
 - 출자·출연 기관의 장 보수 책정 시 성과계약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함.
 -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 법 제21조 제2항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등을 정함.
-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안 제9조)
 -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허가 취소, 설립 목적 달성 불능, 출자 기관의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해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실적 평가 등(안 제10조)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 내용, 경영평가 관련 제출서류 등에 대한 사항과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
-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안 제11조)
 - 성과계약 달성정도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운영과 구성인원에 대한 자격요건, 권한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
-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2조)
 - 시장은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토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토록 함.
-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안 제13조)
 -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한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을 명시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법」, 「상법」과 개별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오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영실적평가로 기관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제정된 조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